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6 선고 2020가단2224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변론 종결 2020. 10. 22

판결 선고 2020. 11. 26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C은 401,311,946원 및 그 중 364,176,437원에 대하여 2019. 8.31.부터,그 중 35,166,150원에 대하여 2019. 9. 19.부터 각 2020. 7. 26.까지 연9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35, 339, 572원 및 그중 35, 166, 150원에 대하여 2019. 9. 19.부터 2020. 7. 26.까지 연 9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,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과 나항 기재 표 내역과 같이 4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 D는 같은 표 순번 4의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원고는 아래 표 '보험금 지급일'란 기재 날짜에 같은 표 '지급한 보험금'란 액수 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.

	피보험자	보험가입금액	보험기간	보증내용	보험금 지급일	지급한 보험금 액수
1	E 주식회사	40,000,000원	2018. 6. 19. 부터 2019. 6. 11. 까지	선급금지급보증	2019. 7. 31.	36,363,637원
2	E 주식회사	250,594,080원	2018. 2. 28. 부터 2020. 2. 26. 까지	선급금지급보증		227,812,800원
3	E 주식회사	110,000,000원	2018. 2. 28. 부터 2019. 2. 11. 까지	선급금지급보증		100,000,000원
4	주식회사 F	50,000,000원	2018. 7. 1. 부터 2019. 2. 21. 까지	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	2019. 8. 19.	35,166,150원

다.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의,그 다음날부터 연 9%로 정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갑 제1호증의 6, 7, 갑 제2호증의 5, 6, 갑 제3호증의 5, 6, 갑 제4호증의 7, 8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피고 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,주식회사 F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피고 회사는 원고가 순번 1내지 3의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E 주식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합계 364,176,437원(= 36,363,637원 +227, 812, 800원 + 100,000,000), 원고가 순번 4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F에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35,166,1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또한 연대보증인 피고 D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순번 4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구상금

35,166,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피고 회사는 401,311,946원(= 364,176,437원 + 35,166,150원 + 364,176,437원에 대한 2019. 8. 1.부터 2019. 8. 30.까지의 지연손해금 1,795,937원 + 35,166,150원에 대한 2019. 8. 20.부터 2019. 9. 18.까지 지연손해금 173,422원) 및 그 중 364,176,437원에 대하여 2019. 8. 31.부터, 그 중 35,166,150원에 대하여 2019. 9. 19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. 7. 26.까지 약정에 의한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피고 D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5,339,572원(= 35,166,150원 + 173,422원) 및 그 중 35,166,150원에 대하여 2019. 9. 19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. 7. 26.까지 약정에 의한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수진